

---

- 2010년도 -  
**보건환경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

2010. 9.



**감사관실(감사총괄팀)**

# I

## 감사목적

❖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과 환경보존을 위한 각종 시험·검사·조사 및 연구 활동의 적정성과 예산·회계, 복무 등 행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기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불합리한 요소를 시정·개선토록 하며,

❖ 특히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식품/의약품 검사업무”가 비록 2009년도 외부청렴도 측정에서 전년도에 비해 우리시의 상승요인에 크게 기여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낮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종합감사를 계기로 “식품/의약품 검사업무”에 대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II

## 감사개요

- ❖ 감사기간 : 2010. 8. 23. ~ 8. 31.(7일간)
- ❖ 감사범위 : 2008. 5월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 추진한 업무전반
- ❖ 감사범위 : '08. 5월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전반
- ❖ 감사반 : 감사반장(감사총괄담당)외 6명 (시민감사관 1명 참여)

# III

## 감사결과

### 1. 감사결과 총괄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천원)				신분상 조치(명)			
계	주의	시정	개선 (경고)	계	추징	회수	감액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 (경고)
12	5	5	2								

## 2. 총 평

❖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질병·전염병 조사 및 음용수·식품·농축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대기·수질·토양·해양·산업폐수 등에 대한 검사 및 측정결과 등을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건강한 시민·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한 녹색인천 구현을 추구하는 연구기관으로서

❖ **보건분야에서는** 2009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분석장비를 보강하여 확진 검사를 기존 2~3일에서 6시간으로 단축하였으며, 또한 식중독 원인균 확인 시간 단축을 통하여 식중독 예방에 기여하고 있고, 그 밖에 먹을거리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계절별 국민 다소비식품 4,559건을 검사하여 이 중 64건의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하는 등 지역 보건 분야 예방·안정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 **환경분야에서는** 24시간 실시간 환경자동측정망 24개소를 운영하여 실시간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악취발생사업장의 원인 규명으로 공정개선 등 악취발생 50% 이상 저감하였으며, 자외선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약수터의 수질개선 향상에 노력하는 등 대기·수질·토양 환경 조사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 신종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유입·확산 및 축산물 안정성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축위생분야에서는** 2009년도 행정안전부 실시 국정평가 가축방역분야에서 가축질병 위기관리 실무메뉴얼에 의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및 발생방지에 기여한 공로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되는 등 구제역·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10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전염병 감시강화, 식품 및 농·축산물의 안정성 확보, 대기 및 수질관리를 위한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추진과 각종 검사업무의 적정성, 예산편성 및 회계업무의 집행상황과 감사결과 이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사한 결과,

### 3. 주요 지적사항

#### « “개선” 처분 사례 »

##### ① 수수료 반환 규정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서는 수수료에 대하여 수입증지로 징수함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증명신청에 대한 변경 내지 취소의 귀책사유가 연구원에 있어도 반환하지 않고 있음.

○ 자치단체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상 합리적이거나 보건환경연구원의 귀책사유나 민원인의 타당한 사유로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 납부한 수수료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서비스 공급자인 자치단체 측에 지나치게 유리한 것으로 소비자(시민)측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의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수수료에 대하여 반환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하고 있는 추세임.

⇒ 수수료 징수방법 및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불반환 규정에 대하여 공급자와 수익자간 형평성에 맞게 개선.

##### ② 수질자동측정소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장밀집지역의 수질오염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좌천에 수질 자동측정소 2개를 설치하여 COD(화학적산소요구량), pH(수소이온농도), 수온, 전도도, DO(용존산소량) 등을 측정하여 시 물관리과, 서구청 등 2개 기관에 수질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 가좌천 하수를 유입(오수 우수 합류식 방법) 처리하는 환경공단(가좌사업소)에는 수질측정 자료를 전송하지 않고 있음.

⇒ 가좌천 하수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환경공단(가좌사업소)에서도 수질 측정 결과에 대한 자료를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방안 강구.

## 《 “시정” 처분 사례 》

### ① 집단급식소 운영·관리 부 적정

○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상시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신고를 득한 후 운영토록 행정상 시정조치 하여, 연구원에서는 식당운영을 중지하였다는 내용으로 감사결과 이행실태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 2008년 6월부터 상시 급식인원이 60-65명 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건물 지하층(면적: 116.7m<sup>2</sup>)에 집단급식소를 재설치·운영하면서 설치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영중이며, 운영중인 집단급식소에는 식중독 환자 발생예방 등을 위하여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어야 하나 아무런 자격도 없는 종업원만을 근무하게 하고 있는 상태임.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선임한 후 관할구청에 설치신고를 득한 후 운영하도록 조치.

### ② 한우 유전자 검사 검체채취량 산정 및 부적합 업소 조치 소홀

○ 2009. 8. 3.부터 최첨단 유전자검사 장비를 도입하여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2009년에 000건을, 2010년 7월말 현재 000건을 검사하였으며, 이 중 0건을 비 한우로 판정하여 해당 구청(00구청, △△구청)에 통보하였으나, 00구청에서는 규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처분(고발) 미 조치.

○ 한우 확인검사를 의뢰받을 경우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검체량을 100g 정도로 균등하게 제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구 및 시 교육청에 한우 확인검사 의뢰 시 주의사항을 통보하면서 최소 검체량을 50g 이상으로 잘못 안내하였으며, 총 00건에 대해서는 검사의뢰 시 검체량을 아예 확인하지도 않거나 50g에서 250g까지 차등하여 제출받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군·구간 행정 불균형 및 예산과 자원을 낭비.

⇒ 00구청에서는 연구원에서 비 한우로 판정 통보된 업소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 요구.

연구원에서는 한우 확인시험을 위한 검사 시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검체량이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확인 철저 지시.

## 《 “주의” 처분 사례 》

### ① 불용품 매각입찰 부 적정

○ 불용품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매각물품에 대하여 감정평가액 또는 제3자의 견적서 등을 제출받아 예정가격을 정한 후, 이를 온비드(정보처리장치)에 게시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여 매각을 하여야 함.

그러나 연구원에서는 불용품을 매각하면서, 0000측정장치외 8종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받았으나, 00000외 24종에 대하여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입찰공고 하면서 예정가격을 0000측정장치외 8종은 95,000원으로, 00000외 24종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여 게시하였어도 추후 개찰시에는 이를 합산한 예정가격을 공개하여 낙찰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1차 입찰시에는 일괄입찰(95,000원 + 비공개 가격 = 예정가격)로 하였어야 함에도 단가입찰(34종×95,000원 = 3,230,000원(예정가격))로 오기 표기함으로서 낙찰자가 혼동하여 입찰을 포기하였고,

2차(재공고) 입찰시에는 온비드상에 최저입찰가를 95,000원으로 함으로서 결국 00000외 24종에 대해서는 가격을 정하지 않고 0원으로 처리하여 매각 처리.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온비드)를 이용하여 입찰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입찰공고문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하는 내용이 상이하지 않도록 주의.

## ② 검사 수수료 징수 및 의약품 등 검사 업무 소홀

○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연구원에서는 최초의약품 검사를 실시하면서 총 8건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기준보다 부족하거나 과다하게 징수하였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사의 경우에만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나, 정기검사가 아님에도 해당 면사무소 직원이 검체를 봉인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19건/3,075,240원을 면제.

○ 의약품 등 검사업무에 대한 처리기간과 관련하여서는

000에서 의뢰한 000 00용스 편지 등 8건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처리기간보다 2일에서 11일을 초과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구청에서 의뢰한 000000큐 등 164건에 대해서도 1일에서 8일을 초과하여 검사

⇒ 업무연찬과 직무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민원업무 적정 처리 준수 지시.

## ③ 사슴결핵병 검진 및 모니터링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슴 사육농가에서 결핵병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 신규사업으로 전국 11개 시·도에서 “사슴결핵병 검진 및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는 진단액, 마취제, 해독제 및 Blow gun(불어서 마취제를 쏘아 보내는 기구) 등 사슴결핵병 검진 관련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연구원에서는 동 사업비로 관련 규정에도 없고 전국 11개 시·도에서도 채용하지 않는 “마취·보정인”을 채용하여 두당 7천원씩 2명에게 699천원을 (99두) 지급함.

⇒ 규정에 없는 사슴 체혈 관련 마취·보정인을 채용하지 않도록 지시.

## 수범사례

1. 건강한 들레길 이용을 위한 진드기 실태조사 ..... 11
2. 한우유전자검사를 통한 유통단계 투명성 확보 ..... 13

## 수범사례 1 건강한 둘레길 이용을 위한 진드기 실태조사

- ◇ 기후변화로 인한 진드기매개질환의 잠재적 확산 예측
- ◇ 인천시민의 생활등산로인 둘레길 주변 진드기매개질환 감염실태조사

### □ 추진배경

- 진드기 매개질환인 쯔쯔가무시증은 2009년 인천지역 85명 발생 및 라임병의 국내발생 가능성 제기
- 홍반열은 2004년 무의도에서 최초환자 발생보고가 있어 관련 질환 예방을 위한 사전조사 필요성 대두

### □ 사업개요

- 대 상 : 계양산 등 9개 등산로 및 무의도
- 기 간 : 2010. 1 ~ 12
- 내 용
  - 진드기매개질환 감염률 조사
  - : 털진드기(쯔쯔가무시증), 참진드기(홍반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 유전자 분석법을 이용한 매개체의 질병원인체 분석

### □ 추진사항

- 참진드기 *Haemophysalis longicornis* 등 4종 분포 확인
- 강화도, 시도, 무의도에서 홍반열 및 라임증 보균 진드기 확인
- 계양산 자락에서 쯔쯔가무시증 보균 털진드기 확인
- 야생 설치류의 쯔쯔가무시증 항체가 확인(양성율 44.7%)

### □ 추진일정

- 털진드기 채집 및 쯔쯔가무시증 보균율 조사('10. 09 ~ 11)
- 렙토스피라증, 신증후출혈열 감염율 조사('10. 10 ~ 11)
- 보고서작성 및 학술대회 발표('10. 11 ~ 12)

## □ 기대효과

- 건강한 레저생활의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 진드기의 매개질환 감염을 실태파악으로 진드기관련 질환 사전예방
- 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결과제공으로 건강한 둘레길 이용을 위한 환경관리

## □ 향후계획

- 야생설치류의 렙토스피라증, 신증후출혈열 감염을 조사
- 보고서 작성 및 결과 고찰을 통해 질병예방을 위한 관리방안모색
-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종합감시체계 구축자료로 활용

## 수범사례 2 한우유전자검사를 통한 유통단계 투명성 확보

- ◇ 한우유전자검사를 통한 한우둔갑판매 방지로 유통단계 투명성 확보
- ◇ 건전한 축산물 유통 문화 정착으로 경제 수도 이미지 제고에 기여

### □ 추진배경

- 축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 수입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 대두
- 일부 축산물유통업자의 한우둔갑판매로 소비자 불안 확대
- 한우확인시험법 신설(2008.12.30.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
- 쇠고기 이력추적제 및 모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실시(2008.6.18.)

### □ 사업개요

- 관내 유통 쇠고기에 대한 한우확인검사
  - 시료수거장소 : 단체급식소, 축산물가공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 한우판별 Marker를 사용하여 한우와 비한우를 판별

### □ 추진사항

- 한우확인시험법 도입 사전준비(2006년~)
  - 한우 유전자 감별법에 관한 자체 연구사업 실시(2006년)
    - : Application of the melanocortin 1 receptor(MC1R) gene for discrimination of Hanwoo from Holstein beef using real -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PCR)
    - 학술지 논문 게재(Korean Journal of Veterinary Service, 2007.12.30.)
  - 한우 유전자 검사방법(MC1R법, MS법, SNP법) 비교 검토
    - : 분석이론, 분석 소요시간, 비용, 타 기관 운용실태 및 최근 동향 등
  - 한우유전자분석 기술 이전 및 관련 지식 습득(전문교육 3회)
  - 2009년 검사장비 취득을 위한 국비 보조금 확보(1억원)
- 2009. 7월 한우유전자검사장비 도입, 검사시스템 구축

- 한우확인검사 수수료 및 운영계획 수립, 조기 시행
  - 민원의뢰시 수수료 근거 마련으로 관내 한우확인검사 수요자 편의 제공
  - 검사실적
    - 2009년 : 398건 검사(혼합형 1건 검출)
    - 2010년 6월 현재 : 151건 검사(비한우 4건 검출)
- 축산물 소비 성수기 대비 군·구 합동수거검사 실시
- 홍보 활동 강화
  - 한우확인검사 관련 안내사항 연구원 홈페이지 게재
  - 한우확인검사 안내 공문 발송(교육청, 군·구청)
  - 홍보(보도)자료 제출
    - 2009. 8. 4. 인천시 한우 유전자검사 시스템 구축(11개 언론사 보도)
    - 2009. 10. 1.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한우확인 합동수거검사 실시 (5개 언론사 보도)

## □ 기대효과

- 과학적 검사기법으로 한우 둔갑 판매시 반드시 적발된다는 공감대 형성, 한우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
- 건전한 축산물 유통 문화 정착으로 축산농가 보호 및 관련 산업 활성화

## □ 향후계획

- 행정기관 수거 검체 및 단체급식 관련 한우유전자검사 지속 실시
- 축산물 성수기에 군·구 합동 수거검사 실시로 감시기능 강화

※ 참고자료 : 한우유전자검사 실적내역 1부.

<참고자료>

## 한우유전자검사 실적내역

□ 2009년 한우유전자 검사 실적

- ☞ 초등학교 77개교 242건, 중학교 5개교 5건, 식육판매업소 71개소 120건, 식육포장처리업체 9개소 16건, 일반음식점 15개소 15건 검사, 혼합형 1건 확인

○ 한우유전자검사 실적 세부내역

(2009년 12월말 기준, 단위:개소,건)

의뢰기관		시료채취장소(개소)		시료수(건)	비 고
<b>총 계</b>		<b>177</b>		<b>398</b>	
학교 및 교육청	초등학교	급식실	23	188	- 관내 초등학교 현황 : 224개교
	중학교	"	1	1	- 관내 중학교 현황 : 126개교
	교육청	초등학교급식실	25	25	
		중학교급식실	4	4	
시·군·구 수거검사	시 (법무담당 관실)	초등학교급식실	29	29	
		식육판매장	4	4	
		일반음식점	2	2	
	군·구	식육판매장	66	114	- 관내 식육판매업소 : 2,403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	9	16	-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체 현황 : 165개소
		일반음식점 등	13	13	- 군·구 위생과 수거의뢰
식육 판매업소	강화웅진축협	식육판매장	1	2	- 자가품질검사

□ 2010년 한우유전자 검사 실적

- ☞ 초등학교 28개교 36건, 중학교 3개교 3건, 고등학교 3개교 3건, 식육판매업소 72개소 100건, 일반음식점 9개소 9건 검사, 비한우 4건 확인

○ 한우유전자검사 실적 세부내역

(2010년 6월 현재, 단위:개소,건)

의뢰기관		시료채취장소(개소)		시료수(건)	비 고
<b>총 계</b>		<b>115</b>		<b>151</b>	
학교 및 교육청	초등학교	급식실	2	10	
	교육청	초등학교급식실	17	17	
		중학교급식실	2	2	
시·군·구 수거검사	시 (특수사법 경찰과)	초등학교급식실	9	9	
		중학교급식실	1	1	
		고등학교급식실	3	3	
		식육판매장	27	27	
	군·구	식육판매장	45	73	
		식육포장처리업체	0	0	
		일반음식점 등	9	9	